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허훈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991

발 의 년 월 일 : 2024년 08월 12일
발 의 자 : 허 훈 의원(1명)
찬 성 자 : 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 김경훈, 김규남, 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김지향, 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도문열, 문성호, 박 석, 박춘선, 서상열, 송경택, 윤기섭, 윤영희, 이상욱, 이영실, 이종태, 이효원, 임춘대, 장태용, 최민규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31명)

1. 제안이유

○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불법주정차 및 청소년들의 불법 주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

○ 이에, 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를 개별 또는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중점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의식 개선 등 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

나. 개인형이동장치의 불법주정차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를 개별 또는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로교통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7호 중 “개인형”을 “청소년 등의 개인형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3호 중 “주차장 및 거치대”를 “주차장·거치대의 개별·공동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안전교육 등)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9조(안전교육 등) ① 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	7. ----- 청소년 등의 개인형 -----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3조(대여 사업자 준수사항)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13조(대여 사업자 준수사항) ----------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 및 운영	3. ---------- 주차장·거치대의 개별·공동 ----------
4. ~ 8. (생 략)	4. ~ 8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○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1항제7호 중 “개인형”을 “청소년 등의 개인형”으로 하고, 제13조제3호 중 “주차장 및 거치대”를 “주차장·거치대의 개별·공동”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☏ 02-2180-7953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